

고 시

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18-178호

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

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8조 규정에 의거 반포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8. 7. 26.

서 초 구 청 장

1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반포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
2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
 - 가. 정비구역의 위치 :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30-16호 외 1
 - 나. 정비구역의 면적 : 3,621.5㎡
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 - 가. 사업시행자의 성명 : 반포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(대표 이순복)
 - 나. 사업시행자의 주소 :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310-4, 관리사무소 (반포동,현대아파트)
4. 관리처분계획인가일 : 2018. 7.20.
5.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요지
 - 가.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
 - 1) 대지면적 : 3,614.7㎡
 - 2) 지하2층/지상20층, 아파트 2개동(108세대), 부대·복리시설

나.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(상가 및 보류지 해당없음)

공급대상	주택 규모별 공급세대수			
	계	59.99㎡	82.01㎡	88.93㎡
계	108	19	87	2
토지등소유자	80	3	75	2
일반분양	12	0	12	0
재건축소형(임대)	16	16	0	0

다. 신설 또는 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 명세

1) 신설 : 도로 6.8㎡

2) 폐지 : 해당없음

라. 기존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 : 2018.11. ~ 2018.12.

※ 관계서류는 서초구청 주거개선과(☎02-2155-7345)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